第23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國 會 事 務 處

2003年1月22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
3.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4.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附議된案件

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3.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4.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6.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 5

(16시51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에 따라서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시54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康來**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李康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며 둘째, 대통령당선인

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 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은 자료와 정보의 제출 및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일곱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행정자치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은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여러분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빨리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7시0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정채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7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동년 11월 8일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간 심사활동을 한 결과 2003년 1월 20일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여야 정치개혁특위 간사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들 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하여 새로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정기회의 경우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여섯째,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에 대해서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72시간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법률안의 연중 균형 있는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일반법률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폐지하고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2월의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 전에 완료하도록 하는 조기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또 다시 동 연장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배제하고 국가위

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또는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심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의결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들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각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5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각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으로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각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과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입법부의 소임은 일단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법 통과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만든 입장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국회법이 비록 진선진미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국회가 진정한 정치의 중심이자 민의의 전당으로서 나아가는데 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정부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바꿈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기능 또한 강화함으로써 조기 결산제도가 도입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심의가 되리

라고 믿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이 실시됨으로써 대정부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느라 애써 주신 정치개혁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또 본회의 통과에 동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17시1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6항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朴洋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으로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 파병 중인 육군 의료지원단 그리고 해군·공군 수송지원단에 이어서 추가하여서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파견부대의 임무는 동맹국 부대의 전개기지에 대한 토목, 건축 등 기지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대민지원 등이고 둘째로는 파견부대의 규모는 150명이고 파견장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하고 그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UN 회원국으로서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전후 복구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파견기간과 관련하여 본 동의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이미 그 시기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2003년 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趙誠俊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심사보고서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議長 朴寬用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지 밝히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趙誠俊 議員 민주당의 趙誠俊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심사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국군건설공병부대의 파견은 아프칸 내로 대상지역을 명백하게 밝혀서 보고하셨고 국방부에서의 제안이유도 이 자료에 보면 '현재 파병 중인 국군부대에 추가해서 건설공병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내용 중에는 파병대상 지역국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라크와의 전쟁이 미국주도의 대테러전쟁으로 있을 경우에 이 부대가 그리도 갈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원안에 첨부해서 미국주도의 아프칸 내 대테러전쟁으로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셔야 겠지요?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李俊 국방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파병동의안의 대상국가는 분명히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라크의 문제가 다시 요구될 때에는 그때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다만 하나의

안으로서 지금 파병되어 있는 전력을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과 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李浩雄 議員 의석에서 -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아니, 의장이 하나의 안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애매해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金成鎬 議員 의석에서 - 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밟는 것이지요?)

○國防部長官 李俊 예, 그렇습니다.

(○朴承國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그때 다시 밟아야죠?)

예, 분명히 다시 밟습니다.

○議長 朴寬用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입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3, 반대 11, 기권 6인으로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94人)

찬성의원(194人)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기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형오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희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양수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철희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미경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정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재형
황승민 황우여

○國會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9人)

찬성의원(198人)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기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희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양수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미경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사덕 홍재형
황승민 황우여

기권의원(1人)

추미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96人)

찬성의원(180人)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김경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기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희상 민봉기 박관용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양수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미경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제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범구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홍사덕 홍재형 황승민 황우여

반대의원(15人)

권철현 김락기 김용갑 박명환
박승국 박원홍 박주천 송석찬
엄호성 이인기 이재오 전용원
정병국 정창화 현승일

기권의원(1人)

김방림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7人)

찬성의원(196人)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기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희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양수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미경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사덕 홍재형 황승민 황우여

반대의원(1人)

추미애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6人)

찬성의원(195人)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배　김영일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기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희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양수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미경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사덕
홍재형　황승민　황우여

기권의원(1人)

김영선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투표의원(190人)

찬성의원(173人)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일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호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문희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양수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청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경식　신영균　신현태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근진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최돈웅
최명헌　최병렬　최선영　최영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운 나　허 태 열
현 승 일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승 민
황 우 여

반대의원(11人)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원 웅　목 요 상
박 승 국　박 인 상　안 영 근　이 규 택
이 원 창　이 재 오　최 연 희

기권의원(6人)

서 상 섭　심 규 철　이 미 경　이 우 재
이 호 웅　추 미 애

○出席議員(223人)

姜 三 載　姜申星一　姜 仁 燮　姜 在 涉
姜 昌 成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權 琪 述　權 寧 世　權 五 乙　權 哲 賢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金 杞 培
金 杞 載　金 德 圭　金 德 龍　金 德 培
金 東 旭　金 樂 冀　金 滿 堤　金 明 燮
金 文 洙　金 芳 林　金 秉 浩　金 富 謙
金 聖 順　金 晟 祚　金 成 鎬　金 令 培
金 映 宣　金 榮 馹　金 榮 春　金 榮 煥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雲 龍　金 元 基　金 元 雄
金 一 潤　金 政 夫　金 貞 淑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忠 兆　金 台 植
金 宅 起　金 鶴 松　金 炯 旿　金 洪 信
金 弘 一　金 花 中　金 希 宣　羅 午 淵
南 景 弼　南宮 晳　柳 漢 烈　柳 興 洙
孟 亨 奎　睦 堯 相　文 喜 相　閔 鳳 基
朴 寬 用　朴 明 煥　朴 炳 錫　朴 炳 潤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洋 洙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雄　朴 鍾 熙
朴 柱 宣　朴 柱 千　朴　振　朴 昌 達
朴 憲 基　朴 赫 圭　裵 基 善　裵 奇 雲
白 承 弘　徐 秉 洙　徐 相 燮　徐 淸 源
偰 松 雄　孫 希 姃　宋 光 浩　宋 錫 贊
宋 永 吉　宋 榮 珍　宋 勳 錫　辛 卿 植
申 溪 輪　申 榮 國　申 榮 均　申 鉉 泰
沈 揆 喆　沈 在 哲　安 炅 律　安 大 崙
安 商 守　安 泳 根　安 澤 秀　梁 正 圭
嚴 虎 聲　吳 世 勳　元 裕 哲　元 喆 喜
元 喜 龍　劉 容 泰　尹 景 湜　尹 斗 煥
尹 汝 雋　尹 榮 卓　尹 鐵 相　尹 漢 道
李 康 斗　李 康 來　李 揆 澤　李 根 鎭
李 洛 淵　李 萬 燮　李 美 卿　李 方 鎬
李 富 榮　李 相 得　李 相 培　李 相 洙
李 祥 羲　李 性 憲　李 承 哲　李 爀 淑
李 完 九　李 龍 三　李 佑 宰　李 元 昌
李 源 炯　李 允 洙　李 仁 基　李 仁 濟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禎　李 正 一
李 鍾 杰　李 柱 榮　李 昌 馥　李 漢 久
李 海 龜　李 海 鳳　李 海 瓚　李　協
李 浩 雄　李 訓 平　李 熙 圭　林 仁 培
任 鍾 晳　林 鎭 出　任 太 熙　張 誠 源
張 永 達　張 在 植　張 泰 玩　田 瑢 源
田 溶 鶴　全 在 姬　鄭 甲 潤　鄭 均 桓
鄭 大 哲　鄭 東 采　鄭 文 和　鄭 範 九
鄭 柄 國　丁 世 均　鄭 宇 澤　鄭 義 和
鄭 長 善　鄭 鎭 碩　鄭 昌 和　鄭 哲 基
趙 富 英　趙 誠 俊　趙 舜 衡　趙 在 煥
曺 正 茂　趙 漢 天　朱 鎭 旺　千 容 宅
千 正 培　崔 燉 雄　崔 明 憲　崔 秉 烈
崔 善 榮　崔 鉛 熙　崔 榮 熙　崔 龍 圭
崔 在 昇　秋 美 愛　河 舜 鳳　韓 昇 洙
韓 和 甲　咸 錫 宰　咸 承 熙　許 雲 那
許 泰 烈　玄 敬 大　玄 勝 一　洪 思 德
洪 在 馨　黃 勝 敏　黃 祐 呂

○出張議員(16人)

權 泰 望　金 淇 春　金 武 星　金 泳 鎭
金 晃 植　柳 在 珪　朴 相 千　沈 載 權
李 敬 在　李 秉 錫　李 允 盛　李 在 昌
全 甲 吉　鄭 亨 根　崔 炳 國　洪 準 杓

○請暇議員(16人)

康 奉 均　姜 成 求　姜 淑 子　姜 雲 太
金 燦 于　金 孝 錫　都 鍾 伊　朴 熺 太
吳 長 燮　李 良 熙　李 源 性　李 漢 東
林 采 正　鄭 夢 準　曺 雄 奎　曺 喜 旭

○出席國務委員

국 방 부 장 관　李　俊
행 정 자 치 부 장 관　李　根　植

【報告事項】

○議長職務代理指定

議長職務代理　副議長　趙富英
1월11일부터
의장귀국시까지
(1월11일자)

○特別委員長選任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委 員 長 金 學 元

(1월22일자)

○幹事選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	金龍學	한나라당
	咸承熙	새천년민주당

(1월22일자)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정치개혁특별	李敬在	李柱榮	한나라당
	李秉錫	李承哲	한나라당
	林仁培	安泳根	한나라당

(1월20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정치개혁특별	李柱榮	李敬在	한나라당
	李承哲	李秉錫	한나라당
	安泳根	林仁培	한나라당

(1월21일자)

○議案提出

환경교육진흥법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정일·강운태·김충조·김효석·김상현·김영배·송석찬·김원길·천정배·강숙자·김부겸·박양수·이희규·전갑길·정철기·박인상·유재건·김방림·조배숙·정동채·김운용·최선영·정대철 의원 발의)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정일·강운태·김충조·김효석·김상현·김영배·송석찬·김원길·천정배·김부겸·박양수·전갑길·정철기·유재건·김방림·조배숙·정동채·김운용·최선영·정대철 의원 발의)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정일·강운태·김충조·김효석·김상현·김영배·송석찬·김원길·천정배·김부겸·박양수·전갑길·정철기·유재건·김방림·조배숙·정동채·김운용·최선영·정대철 의원 외 1인 발의)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이상 9건 1월2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02년12월31일 이부영·윤여준·정병국·이주영·권오을·김홍신·안경률·이미경·김용학·이호웅·권기술·임인배·신현태·박원홍·안영근·오세훈·남경필·김문수·박혁규·조정무 의원 발의)

1월2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1월2일 이상희·정의화·김문수·김형오·최병렬·김진재·임태희·최병국·박원홍·김정부·이인기·정형근·서정화·이주영·안영근·이근진·함석재·박종근·박종희·이원형·김영춘·정문화·이승철·권철현·박헌기·권영세·강신성일 의원 발의)

1월3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1월2일 정부 제출)

1월3일 教育委員會에 회부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1월3일 이원형·이인기·이상희·임인배·김상현·이해봉·김황식·김명섭·윤영탁·박시균·이우재·유재규·박원홍·조웅규·김용학·이경재·서청원·서정화·안상수·김동욱 의원 발의)

1월3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電波法中改正法律案(박진 의원 대표발의)

(1월3일 박진·이상득·심재권·박명환·강창희·윤경식·정병국·오세훈·안상수·권기술·김용학·이종걸·강재섭·박상희·이강두·김태홍·서청원·최병렬·조웅규·임인배·김정부 의원 발의)

1월6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월6일 임인배·강재섭·권태망·김기배·김광원·김락기·김명섭·김성조·김용갑·김용학·김윤식·김정부·김홍신·맹형규·목요상·박세환·박시균·박재욱·박진·박창달·박혁규·신현태·안경률·안영근·안택수·양정규·오세훈·윤경식·윤두환·이경재·이부영·이상득·이상배·이성헌·이승철·이원형·이해봉·임태희·전재희·정병국·정의화·조정무·주진우·최연희·하순봉·황우여 의원 발의)

1월7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월6일 임인배·강운태·강재섭·권기술·권태망·김광원·김기배·김락기·김명섭·김성조·김용갑·김용학·김윤식·김정부·김학송·김홍신·김효석·도종이·맹형규·목요상·박세환·박시균·박원홍·박진·박혁규·신현태·안경률 안택수·양정규·오세훈·윤경식·윤두환·이경재·이근진·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헌·이승철·이원형·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병국·정의화·조정무·주진우·최연희·하순봉 의원 발의)

1월7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集團에너지事業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월6일 임인배·강숙자·강재섭·권기술·권태망·김경천·김광원·김기배·김락기·김명섭·김성조·김용갑·김용학·김윤식·김정부·김홍신·김효석·도종이·맹형규·목요상·박명환·박상규·박세환·박시균·박원홍·박진·박혁규·신현태·안경률·안상수·양정규·오세훈·윤경식·윤두환·이경재·이상득·이상배·이성헌·이승철·이원형·이주영·이해봉·임태희·전재희·정병국·정의화·조웅규·조정무·주진우·최연희·하순봉·황우여 의원 발의)

1월7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원철희 의원 대표발의)

(1월8일 원철희·이희규·장성원·김경천·김학원·안상수·이양희·박명환·김용학·이주영·김정부·양정규·오장섭·강창희·이재선·정철기·주진우·김종호·최선영·송광호·박희태·김영진·허태열·정진석·권기술 의원 발의)

1월9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시균 의원 대표발의)

(1월10일 박시균·남경필·이원형·최영희·박종웅·김홍신·심재철·정창화·홍준표·김명섭·민봉기·김용학·임인배·김광원·박승국·김성순·이상배·허태열·김동욱·이원성·권오을 의원 발의)

1월11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1월13일 김홍신·김명섭·김원웅·김원기·남경필·심재권·정범구·김태홍·엄호성·박인상·김성순·서상섭·오세훈·김상현·권기술·박양수·김부겸·이호웅·김용학·이재선 의원 발의)

1월14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1월14일 정부 제출)

1월15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1월22일 行政自治委員長 제출)

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中改正法律案

(이상 4건 1월22일 政治改革特別委員長 제출)

○議案審査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11월12일 정부 제출)

1월16일 國防委員長 보고

수정의결

○請願提出

주택공사의임대주택약관등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월3일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9-1 화북주공아파트 303동 112호 김기찬 외 507인으로부터 玄敬大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6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사면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월10일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94 창곡빌딩 201호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대표 김석준 외 5인으로부터 元喜龍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월11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독립기념관내의조선일보윤전기철거에관한청원

(2003년1월13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86-7 동양빌라 B02호 조선일보없는아름다운세상을만드는시민모임 대표 임현구로부터 金元雄·金希宣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15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조속처리에관한청원

(2003년1월15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75-1 삼호아파트 14-602 방배삼호아파트14동리모델링조합 김현귀로부터 朴源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18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書面質問書提出

지방6급공무원일반승진시험과승진의결의병행제운용지침에관한질문서

(1월10일 尹景湜 의원 제출)

1월10일 정부에 이송

언론사과징금취소결정에대한감사원특감과관련질문서

(1월13일 朴鍾雄 의원 제출)

1월13일 정부에 이송

지방자치단체소속선수단운영부실및기초자치단체공무원직급별정원비율조정에관한질문서

(1월16일 尹景湜 의원 제출)

1월16일 정부에 이송

도로교통안전기금분담금환급,지방자치단체소속선수단운영부실에관한질문서(2건)

(1월20일 尹景湜 의원 제출)

1월21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청주'충청리뷰'주간신문에대한과잉수사의혹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월4일 정부 제출)

지방6급공무원일반승진시험과승진의결의병행제운용지침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월2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2002년도수산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2002년12월31일 정부 제출)

2002년12월31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